

# 「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」 관련 질의응답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3호 관련, 2025.2.1. 시행)

연번	질의	답변
1	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급여 적용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	<p>○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 2025년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됩니다.</p> <p>(※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 기준 아님)</p>
2	2025년 2월 1일 전에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한가요?	<p>○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 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(3단계)을 시행한다면,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.</p>
3	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<u>또는</u>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메탈, 금,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한가요?	<p>○ 보철수복을 메탈, 금,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.</p> <p>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고시)에 의하면, 치과임플란트는 보철수복 재료가 PFM <u>또는</u>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급여에 해당됩니다.</p>
4	PFM <u>또는</u>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을 하지 않고 지대주(ball 타입 등)로만 시술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한가요?	<p>○ 보철수복을 비귀금속도재판(PFM Crown)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다른 형태 및 재질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.</p> <p>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고시)에 의하면, 분리형 식립재료(고정체, 지대주)와 비귀금속도재판(PFM Crown) <u>또는</u>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하는 경우만 치과임플란트를 1치당으로 보험급여 합니다.</p> <p>- 따라서, 볼(Ball Type) 등 형태의 지대주(Abutment)를 이용하여 PFM <u>또는</u>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인 피개의치(Over Denture)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.</p>